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84

발의연월일: 2022. 9. 28.

발 의 자: 박주민·강민정·강병원

권칠승 · 김의겸 · 송재호

유정주 • 이원택 • 정태호

주철현 • 한준호 • 황운하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「공직선거법」에 다수의 위헌·헌 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.

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,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직 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, "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"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2 항)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고 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8조제1항등).
- 나.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9조제1항 등).
- 다.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·도화의 배부·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90조 삭제 및 안 제93조 삭제).
- 라.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렬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5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함(안 제105조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항 중 "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 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"을 "누 구든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9조제1항 중 "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"을 "후보자는"으로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"를 "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,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"으로 한다.

2의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

후보자와 선거사무소마다 각 1대 • 각 1조

제90조 및 제9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5명(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)을 초과하여"를 "30명을 초과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55조제1항제5호 중 "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(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)을 위반하여"를 "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이나 금액을 초과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어깨띠 등 소품) ① <u>후보</u>	제68조(어깨띠 등 소품) ① <u>누구</u>
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	<u>든지</u>
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	
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	
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	
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	
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	
<u>는</u>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	
사진・성명・기호 및 소속 정	
당명,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	
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	
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	
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	
옷(上衣)・표찰(標札)・수기(手	
旗) · 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을	
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	
운동을 할 수 있다.	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	<u>&lt;삭 제&gt;</u>
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	
어깨띠,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	
모자나 옷, 표찰・수기・마스코	
트・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	
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	

#### ③ (생략)

제79조(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 담) ①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 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선거운동기 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·정 책이나 후보자의 정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 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 을 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공개장소에서의 演說·對談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.
- 1. · 2. (생 략) <신 설>
- 3. <u>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</u>
  <u>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</u>
  후보자마다 1대·1조

③ (현행과 같음)
제79조(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
담) ① <u>후보자는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
후보자와 선거사무소마다 각
<u>1대·각 1조</u>
3.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, 자
<u>치구·시·군의 장선거 및 비</u>
레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

④ ~ ⑫ (생 략)

제90조(시설물설치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(보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. 이 경우 정당 (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명칭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성명·사진 또 는 그 명칭 ·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.

- 1. 화환·풍선·간판·현수막· 애드벌론·기구류 또는 선전 탑,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·진열·게시·배 부하는 행위
- 2.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
  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
   3.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·마

④ ~ ⑫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• 판 매하는 행위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다.
- 1.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「정당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
- 2.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· 업무 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 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

第93條(脱法方法에 의한 文書・ | <삭 제> 圖畵의 배부・게시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 (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 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(創黨準備委員會外 政黨의 政綱・정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 또는 候補者 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

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를 支持·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, 人事狀,壁報, 사진, 文書·圖畵, 印刷物이나 錄音·錄畵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영 또는 게시할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, 제 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 장을 포함하며, 이 경우 "예 비후보자"는 "후보자"로 본다)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
- 2.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「정당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
- ② 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

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 ·演藝·演劇·映畵·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 으며, 候補者는 放送·新聞·雜 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문 또는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록 勸誘·約束하기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身分證明書· 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·배 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

第105條(行列 등의 금지) ① 누구 章 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<u>5명</u> (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)을 초 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

第105條(行列	등의	금지)	1	
				<u>3</u>
<u>0</u> 명을 초되	<u> </u>			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--. <단서 삭제> 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 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 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 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<u>제68조제2항</u> 또는 제3항(어 깨띠의 규격을 말한다)을 위 반하여 어깨띠, 모자나 옷, 표 찰 · 수기 · 마스코트 · 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
- 6. ~ 20. (생 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-----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

1. ~ 3. (현행과 같음) 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
위반하여 규격이나 금액을 초
과하는
6. ~ 20. (현행과 같음)

役	또는	400萬	i원	이하의	罰金
에	處한に	7.			
			<b>.</b> .		

- 1. ~ 4. (생 략)
- 5. 第93條(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・圖畵의 배부・게시 등 금지)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・圖畵 등을 배부・첩부・살포・게시・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,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・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・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
- 6. ~ 8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  ·② (생 략)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  - 1.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

1. ~ 4. (현행과 같음)	
/ 시· 게 \	

- 6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  - ② (현행과 같음)

3

1.	-	 	 	 	 	 
_		 	 	 	 	 

가. ~ 사. (생 략)

아. 第90條(施設物設置 등의<삭 제>금지)의 規定에 위반하여宣傳物을 設置・진열・게시・배부하거나 하게 한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・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

자. ~ 너. (생 략)

2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자. ~ 너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